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요 구

제 목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

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예산군 ○○○○센터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7. 1.부터 2016. 7. 18.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○○○○센터 시○○구단에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1. 사업대상자 선정 공통지원 요건 검토 소홀

충청남도 예산군 ○○○○센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주도 사업(품목)에 기술·교육·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‘2016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(2016년 유용 식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 시범)’의 사업대상자로 ○○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.

「201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 요건에 “마.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(다만,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)”으로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2016년 유용 [식용] 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

지역농업활성화 시범사업(사업비 320백만원)’의 사업 대상자로 ○○○○조합법인 (대표자 ○○○)을 선정하면서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공통지원 요건 검토를 소홀이 하여 법인체 설립일이 1년 미만인 ○○조합법인은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예산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